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7
----------	-----

2023. 6. 12.(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12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채홍경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함)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새로이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재외국민 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관련 단서 신설(안 제8조, 안 제10조제1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주민투표청구서 등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7호 서식)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제정 목적

- 금번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법 제5조제1항이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라 안 제3조에서 19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 법 제7조제1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안 제4조에서 기존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 제10조에서 종전에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던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안 제8조 단서를 신설하였고,

—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 관련 규정인 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어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안 제12조~제15조에서 심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심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그 임기, 심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음.

○ 위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그밖에 별지 제1호~제7호의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21. 12.)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용어 등을 알맞게 개정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주민의 참여”를 “주민참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 ””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9세 이상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으로 한다”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로, “20분의1”을 “20분의 1”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사본”을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해당 부분만”을 “해당 부분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심의회 운영)”을 “(심의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심의회 운영”을 “심의회 운영”으로,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간사) ①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 당해”를 “기간 내에 해당”으로,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로, “범위내”를 “범위”로,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 및 제19조(중전의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표·공고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도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도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지사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 첨부서류: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1.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 사항
2.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총액 500억원이상 투자 사업
4.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제5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
----- 20
분의 1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
일간으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을 구
분하여 읍·면·동별로 작성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
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해당 시·군의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은 관계 공무원을 참관시켜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사본-----
-----.

② -----

-----.
----- 해당 부분만-----
-----.

③ 제1항에 따른 -----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북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도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 사회 단체대표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신 설>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처리기간)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조례에서 심의회 운영 -----

-----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심의회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14
일 이내-----

----- 법 제12조제7
항에 따른 -----

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공고방법) 이 조례에 의한 공표와 공고는 도보?게시판 또는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도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표·공고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공고는 도보·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도홈
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관련법령 발췌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주소

8.~11. (생략)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의 대상 변경,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